연체이력 정보 공유제한 관련 비조치의견서

비조치의견서 (■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담당자	담당부서				연락처	02-3145-7149
담당자 요청대상 행위	담당부서					
	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나, 이 이러한 신용회복 지원활동은 신용정보법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정확성· 최신성 유지 의무 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비조치 등 행정적 지원방안이 필요					
	금융권의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방안 주요 내용					
	-		중 발생한 소	·액연체를 '2'	1년말까지	성실히 전액 상환한
	②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채무를 성실한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의 연체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					
	❸ 신용정.	보원은 코로나1	9 신용회복	지원 대상자	의 연체이력	정보 공유를 제한
	 ●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 하더라도 금리·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며, 코로나19라는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여 개인·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 등 					

□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소액연체자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감독당국과 금융권 간의 합의 내용에 따른 신용회복 지원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자 함 ○ '20.1.1.~'21.8.31. 기간중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중 2021.12.31.까지 전액 상환(채무자 변제 및 보증인 변제를 포함)된 개인·개인사업자 채무 등에 판단 대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채무자의 연체이력정보를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제18조 및 제5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책하는 한편 ㅇ 금융회사가 동 지원방안에 따라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□ 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4조(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)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·개별적 행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. 2.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 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.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 판단이유 합리한 경우 제5조의3(직권에 의한 법령해석·비조치의견서 제시)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없 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. 1. 유사한 유형의 법령해석·비조치의견서 요청이 있어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 2.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